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·운영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, 안전관리 등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 및 조문정리

- 1) 제명변경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 ⇒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
- 2) 장 신설, 보완 등으로 조문 체계정리

나.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제5조)

다.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

- 1)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·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6조~제9조)
- 2)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10조)

- 3)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·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16조~제17조)
- 4) 대책본부회의, 상황판단회의 규정(안 제18조~제19조)
- 5) 파견근무자의 요청, 교육, 임무 규정등(안 제20조~제22조)
- 6) 동원체계의 구축 등(안 제25조)
- 7) 재난안전상황실 설치, 기능(안 제26조~제27조)
- 8) 안전관리자문단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28조~제32조)

라. 재난예방 및 대비

- 1) 재난예방조치, 안전점검, 안전조치 규정(안 제33조~제34조)
- 2) 재난예보·경보체계구축, 종합계획수립(안 제35조)
- 3)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·운용(안 제37조)
- 4) 재난대비훈련(안 제39조)

마.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규정(안 제40조~제43조)

바.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

- 1) 안전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44조)
- 2)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(안 제45조)
- 3)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(안 제46조)
- 4) 안전교육 및 수당 등(안 제47조~제4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:안전치수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, 우03718, 전화 (02)330-1028, FAX (02) 330-8945, E-mail : okajeby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
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